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대표발의: 고 병 준 의원)

의안 번호	23-138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10. .

발의자 : 고병준, 권영숙, 권인순, 이한동,
장정희, 차해영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-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“후생복지” 및 “맞춤형 복지제도”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- 특히,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선택적 복지제도”에서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로의 용어 변경(안 제2조~제8조)
 - 「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」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, 마포구 예·결산서 상 명시되어 있는 “맞춤형 복지제도”로 조례에 명시
- 나. 후생복지사업의 시행(안 제7조)
 -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함.

3. 관계법령

「지방공무원법」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3. 10. 6. ~ 10. 11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선택적 복지제도 운영)”을 “(맞춤형 복지제도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, 제2항 및 제7항 중 “선택적”을 각각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제7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
7. 단체보장보험,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선택적 복지제도 운영)”을 “(맞춤형 복지제도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선택적”을 각각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
7. 단체보장보험,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<u>선택적 복지제도</u>”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.</p> <p>4. “복지포인트”란 <u>선택적 복지제도</u>의 설계·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.</p> <p>제5조(<u>선택적 복지제도 운영</u>)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<u>선택적 복지제도</u>를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u>선택적 복지제도</u>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 <p>⑦ 그 밖에 <u>선택적 복지제도</u>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<u>맞춤형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----- <u>맞춤형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<u>맞춤형 복지제도 운영</u>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맞춤형</u> ----- -----.</p> <p>② <u>맞춤형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 <u>맞춤형</u> ----- ----- -----.</p>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1. ~ 5. (생략)

<신 설>

- 6. (생략)

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 (생략)

②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2. ~ 4. (생략)
- ③ ~ ⑦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-

--.

- 1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- 2. ~ 6. (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- 7. 단체보장보험,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- 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제8조(후생복지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-----

-----.

- 1. ----- 맞춤형 -----
- 2. ~ 4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

생복지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형”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선택
적”을 “맞춤형”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선택적 복지제도 운
영)”을 “(맞춤형 복지제도 운영)”으
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
“선택적”을 각각 “맞춤형”으로 한
다.

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
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
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
같이 신설한다.

1.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

7. 단체보장보험, 건강검진 및 예
방접종과 정신·심리 상담 지원

제8조제2항제1호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
춤형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전단 중 “선택적”을 “맞춤
형”으로 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공무원법

[시행 2022. 12. 27.] [법률 제19108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]

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(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)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0., 2021. 10. 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,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5. 18., 2021. 10. 8.>

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, 방법,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15. 5. 18.>

[전문개정 2008. 12. 31.]

서울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교육후생팀 박재혁
연 락 처	02-3153-8226